

마킹기 물품 공급 계약서

(번호: VK190000 - 00)

발 주 자 (갑) :

납품 및 설치자 (을) : (주)비디오젯코리아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상암빌딩 13층
대표이사 : 신대준

상기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물품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
(이하 발주자를 "갑" 이라 칭하고 납품 및 설치자를 "을" 이라 칭한다)

- 아 래 -

제 1조 : 계약 물품

모 델 명	수 량	단 가	금 액	VAT
합 계				

"갑"은 계약 물품을 사용중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필히 을에게 주문한다. (해당없음)

제 2조 : 결제 조건

설비업체 납품 설치 시운전 완료후

구 분			
금 액			
지 불 시 기			
지 불 조 건			

제 3조 : 세금계산서 발행

설비업체 납품후 별도 성가정식품에서 지정

구 분	금액	VAT

제 4조 : 납품장소및 조건

- 1) 납품 장소 : "갑"의 지정 장소
- 2) 납품 장소 조건 :

가. 전원 공급범위: 전원은 "갑"의 책임하에 기계설치 장소까지 접지가 되어 있는
정격전압 단상 220V/50~60Hz(또는 110V)가 공급되어져 있어야 한다.

나. 상은,상습이 유지되어야 한다.

제 5조 : 비디오젯코리아 매출인식조건

로 납품및 설치조건으로

비디오젯코리아의 의무는 다하는것으로 한다. (추후상황은 별도 요청처리한다)

제 6조 : 하자보증 및 A/S

- 1) 하자보증기간은 납품후 1년으로 하며, "을"은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/10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"갑"에게 제출한다.
- 2) 하자보증기간 중이라도 "갑"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은 "갑"의 책임으로 하여, "을"이 유상수리로 한다.
- 3)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A/S(부품 및 서비스 용역대가 등)는 "갑"의 비용으로 하며, "을"은 서비스제공 후 즉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, "갑"은 1개월 이내에 "을"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.
- 4) "을"이 공급하는 소모품 및 부품이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계약제품의 하자는 전적으로 "갑"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7조 : 기계운용교육 (추후 요청시)

본 계약에서 칭하는 기계운용교육이라 함은 기본교육, 기술교육으로 구분하며,

- 1) 기본교육이라함은 기계의 가동순서, 작동방법 등 기계운용상 간단한 기초지식 및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말한다.
- 2) 기술교육이라 함은 기본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기계의 점검, 사용자측의 단순수리, 응급조치 등 기계의 전반적인 기술지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8조 : 권리와 의무의 양도

본 물품의 납품 후 "갑"은 물품 대금 전액을 "을"에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 할수 없다.

제 9조 : 소유권 유보

- 1) 물품 대금이 "을"에게 전액 현금(어음 결제시는 만료일)결제될 때까지 계약 물품의 소유권은 "을"에게 있으며 "갑"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즉,대금결제가 원활치 않을시 end user에 설치된 장비를 회수 할수도 있다.
- 2) 계약의 해지/해제 사유 발생시 "갑"이 보관하고 있는 "을"의 공급 물품중 미결제분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, 본 제품이 "갑"의 창고에 있든지 "갑"이 위탁한 제3의 장소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"을"은 환급 할 수 있다.
- 3) 제2항의 사유 발생시 "갑"은 "을"에게 어떠한 민·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며 채권자로부터 가압류, 압류,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취해질 때는 "을"의 물품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"을"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.
- 4) 소유권 유보로 말미암은 권리는 외상판매로부터 오는 "을"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

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"을"만 가지며 "갑"이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.

제 10조 : 적성국 재판매 금지

- 1) “갑”은 "을"과의 거래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을 아래에 명시한 국가로 재판매, 수출하거나 또는 동 국가로 재판매, 수출하는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.
- 2) 대상 국가 : 쿠바(Cuba)/이란(Iran)/북한(north Korea)/수단(Sudan) / 시리아(Syria)/미얀마(Myanmar)(Burma)

제 11조 반 부패 방지법 준수

갑은 (주)비디오젯코리아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1977년도 개정된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(FCPA)을 포함한 미국의 부패 방지법과 대한민국의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법에 관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,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 합니다.

제 12조 : 계약의 해석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.

제 13조 : 합의 관할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"을"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"갑", "을" 서명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"갑"

"을"

(주)비디오젯코리아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
한샘상암빌딩 13층
대표이사 : 신대준